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96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김미애 · 김기현 · 강승규
이종배 · 김 건 · 배준영
송석준 · 권영진 · 김정재
최수진 · 김예지 · 성일중
박정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러나 최근 충남 청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4년간의 집단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에 대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며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기관은 그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협

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학교의 장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법률지원을”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법률지원을”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중대한 학교폭력 대응 강화) ① 학교의 장은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 및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중대한 학교폭력 조사는 제11조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전문기관은 그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⑧ (생략)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u>법률지원을</u>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⑩ ~ ⑭ (생략) <u><신설></u>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u>관할 수사기관</u> <u>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법률지</u> <u>원을</u> ----- ----- -----. ⑩ ~ ⑭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3(중대한 학교폭력 대응</u> <u>강화) ① 학교의 장은 반복적</u> <u>· 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u> <u>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u> <u>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 및 시</u> <u>·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여</u> <u>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청</u> <u>의 중대한 학교폭력 조사는 제</u> <u>11조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이</u> <u>수행하고 전문기관은 그 조사</u>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u>정할 수 있다.</u> ⑧ ~ ⑰ (생략)	<u>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협의를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u> <u>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한다.</u>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한다. ⑧ ~ ⑰ (현행과 같음)
--	---